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-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 사유

그 간 T/F팀으로 운영되던 “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추진단”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여 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전환·설치하여 구민 숙원사업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구본청 주민생활국 밑에 “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추진단”을 둠(안 제3조의2)
- 나. 신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5. 기타 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4. 1. 16. ~ 2014. 2. 5. (제출의견 없음)
- 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4. 2. 11.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- 사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한시기구)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에 한시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을 둔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조의2(한시기구)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권에 한시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을 둔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해당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이천구
연락처	02-3153-8213